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, 중소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디지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(5급 3명, 6급 2명, 7급 1명)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, 1명(5급 1명)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(6급 10명, 7급 7명)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, 5명(6급 5명)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2. ~ 12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30조제5항 전단 중 “기획재정부”를 각각 “재정경제부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512”를 “516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505”를 “509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87”을 “491”로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31조 관련)

1. 제3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12월 31일)

총계	1
----	---

일반직 계	1
-------	---

5급 이하	1
-------	---

2. 제3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12월 31일)

총계	5
----	---

일반직 계	5
-------	---

6급 이하	5
-------	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명)은 산업통상부, 1명(5급 1명)은 보건복지부, 1명(5급 1명)은 국토교통부, 1명(5급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31조(한시정원)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.

②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.

-----.
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한시정원) ① -----

2026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2026년 12월 31일-----

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2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12</u>	<u>516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505</u>	<u>509</u>	+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487</u>	<u>491</u>	+4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6